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599

발의연월일: 2021. 9. 15.

발 의 자: 유경준・金炳旭・김상훈

김은혜 • 박성중 • 박수영

이 용・정동만・추경호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히 육성이나 보호가 필요한 기술혁신, 첨단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이며 국내외 게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 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이에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 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25조의6제1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7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게임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 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게임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게임 연구·인력개발비에 제1호의 비율과 제2호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 2.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게임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게임물"로, "상영된"을 "상영되거나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영상물

제104조의22의 제목 중 "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경기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각각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로,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를 하기 위한 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 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선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일 것
-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창설하여 이를 운영(이스포츠대회의 개최, 지원, 홍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소요비용 계산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0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0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2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게임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3(게임 연구·인력개발비
	의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게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u>이 조에서 "게임 연구·인력개</u>
	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게
	임 연구·인력개발비에 제1호의
	비율과 제2호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u>우: 100분의 40</u>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
	<u>우: 100분의 30</u>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
	<u>0</u>
	2.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영상콘텐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영상콘텐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영상콘텐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 액을 말한다)에서 게임 연구· 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 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 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신 설>

<u>상영되</u>
거나 제공된
<u>.</u>

- 1. 2. (현행과 같음)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 물 중 영상물
- ②·③ (현행과 같음)
- 및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 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스포츠를 하기 위한 경기부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 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 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 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 <u>츠경기부</u>-----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

-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 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 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 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선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 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 수일 것
-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 <u>자가 1명 이상</u>일 것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u>운</u>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

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 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 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신 설>

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
는 이스포츠경기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 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 과 관련된 경기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 를 창설하여 이를 운영(이스포 츠대회의 개최, 지원, 홍보 등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 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 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 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 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 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 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 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 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 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u>다.</u>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소요비용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u>제10조, 제10조의3</u>
<u>제104</u>
<u>조의25, 제104조의27</u>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3. 제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 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

<u>.</u>
②
제10조, 제10조의3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u>제1</u>
<u>04</u> 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
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
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
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u>স</u> া1
04조의25, 제104조의27
3 (현행과 같음)
しても一年日/